

3/12

서울지방법원

2000. 2. 2. 원결신고	인
2000. 2. 2. 원본영수	

제 2 민 사 부



판 결

사 건 99나58531 손해배상(기)

원고,피항소인 별지 기재와 같다.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, 이 상 훈

피고, 항소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

대표자 사장 손 장 호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창 욱

변 론 종 결 2000. 1. 19.

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1999. 6. 24. 선고 98가소1000654 판결

주 문 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3. 원심판결 중 원고 18. 표시란의 “김해자”를 “김희자”로 정정한다.

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1998. 12. 7.부터

2000. 1. 19. 현재까지

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세일까지는 연 25%의

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항 소 취 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, 다만 원심판결 중 원고 18. 표시란의 “김해자”는 “김희자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0. 2. 2.

재판장 판사 권오권 _____

판사 이종원 _____

판사 엄상원 _____

2000. 2. 2.

정 본 입 니 다.

2000. 2 09

서 울 지 방

